

이 보도자료는 1. 30.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권보호관/전문공보관 김상현

전화 031-909-4336

보도자료
2024. 1. 30.(화)

제 목

「경기 북부지역 다방업주에 대한 강도·강간등 살인 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고양 소재 피해자 A(여, 64세) 운영의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6일 후에 양주 소재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한 피고인 이영복(남, 57세)을** 오늘(1. 30.)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통합심리분석,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유전자 감정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23. 11. 12.)한 후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자, **금품을 노리고 손님인 척 피해자 A 운영의 다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단둘이 남게 되자 셔츠로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현금을 강취하고,**
 - 이후 도주하여 식당 등지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자금을 마련하였는데, **피해자 B 운영의 다방에서 술값으로 가진 돈 대부분을 탕진하자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후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사건관계인

- 피고인 : 이영복(남, 57세, 일용직노동)
 - ※ 경찰은 '24. 1. 10. 피고인의 신상정보(이름, 출생연도, 사진) 공개
- 피해자 : A(여, 64세), B(여, 66세)

II

공소사실 요지

- '23. 12. 30. 고양시 소재 피해자 A 운영 다방에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힘껏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 33만 5천 원을 강취 [강도살인]
- '24. 1. 5. 양주시 소재 피해자 B 운영 다방에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 39만 6천 원을 강취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III

수사 경과

- '24. 1. 5. 경찰, 피고인 검거
- '24. 1. 7.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 '24. 1. 12. 구속 송치 【죄명 : 강도살인】
- ~ '24. 1. 29. 검찰 보완 수사,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 추가 입건
 - ※ 피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대검 통합심리분석, 피고인의 금융자료 확인·분석, 피해자 유족 면담 등
- '24. 1. 30. 구속 기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① 강도살인 범행 규명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 피고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11. 12.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용노동을 하며 지내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 금품을 노리고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셨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살해하고,
 - 이후 다방 안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물색하고, 피해자의 주머니, 금고 등을 뒤져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음
- 결국 피고인은 금품 강취를 위해 피해자의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강도살인 혐의는 명확히 규명되었음
-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가게 문을 직접 잠근 후 열쇠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미리 준비해 왔던 옷으로 갈아입고, 핸드폰을 불상의 장소에 버리고 현금만 사용하는 등 용의주도한 도주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음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피고인은 '23. 12. 30. A를 살해한 후 도피를 시작하여, '24. 1. 2. 및 1. 4. 파주에 있는 식당과 술집에서 금품을 훔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음

※ 피고인의 1. 2.자 절도는 검찰 수사 중, 1. 4.자 절도는 경찰 수사 중

- 이후 피고인은 양주 쪽으로 이동하여 '24. 1. 5. 피해자 B 운영의 다방에 들어갔는데, 당시 술값을 선불로 지급하며 술을 마셨고, 이후 수중에 있던 돈이 거의 떨어지게 되자 술값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후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결국 피고인은 절도를 통해 마련한 도피자금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대부분 사용하게 되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강도살인 혐의는 명확히 규명되었음

②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살인 추가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 경찰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후 국과수의 유전자 감정 회신 결과에 따르면,
 -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검찰은 위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강도살인 이외에도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죄를 추가로 입건하여 기소하였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 검찰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구조금, 생계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하였으며, 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 A의 유족에게는 장례비 집행 예정, 심리치료 진행 중
 - ※ B의 유족에게는 장례비, 생계비, 유족구조금 지급 완료
-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도 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음

V

향후 계획

- 검찰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던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